



조달청

2022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1차)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시범사용 기회와 초기판로를 제공하고자 『2022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1차)』 하오니 희망 기업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일

조달청장

혁신시제품이란?

-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성평가' 면제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29호)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40호)

1 지정분야 · 지정대상 · 신청자격

-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 분야 중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중복신청 금지)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디지털 뉴딜) ①D.N.A 생태계 ②비대면 인프라 ③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④SOC디지털화 (그린뉴딜) ⑤탄소중립 ⑥도시.공간.생활 인프라 ⑦저탄소.분산형 에너지 ⑧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 자세한 사항은 '한국판 뉴딜 2.0(p25 ~p34.) 참조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8번)에서 확인
3. 한국판뉴딜 2.0 분야	

□ 지정 대상

- 기술개발단계(TRL) 7~9^①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단,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2022년까지만 한시적 적용)

※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유의 사항>

- 1.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제품+서비스 포함)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 2-2. 적용 안전성」 부분에 예상되는 규제요소와 극복방안(예시: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명확하게 제시**

- 2. 심사 및 지정 제외 안내(지정신청 제한)**
 -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 제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 동일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제안할 수 없음**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 혁신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 ‘가’ 와 ‘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나.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가. 추진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나. 참여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물품 식별번호를 등록한 자

[신청자격 예외 사항 안내]

1. 제조물품 입찰참가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관련

- ‘①항 가호’와 ‘②항 나호’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 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미등록 업체도 아래 사항 충족시 지정 신청은 가능. 단, 이 경우 혁신성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평가이후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지정신청과 병행하여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물품식별 번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①항 가호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신청자격 ②항 나호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신청방법 : 공고에 첨부된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매뉴얼(p17)’을 반드시 참고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 제목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에서 확인 (본 공고서 11쪽 참고)

2. 특허(실용신안) 권리(전용실시권리자,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 관련

-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신청 불가하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출원중이라 하더라도 ‘기술이전 업무협약서’ 제출로 지정신청 가능. 단, 이 경우 혁신성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유의 사항>

- ①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 확인
 -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 약정서(공고서 별첨 서식 활용) 제출

2 신청서 접수 기간

□ 신청 기간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 : 2022. 03.03. 18:00까지

회 별	신 청 기 간	지정 분야
공급자제안 제1차	2022. 02.04. ~ 2022. 03.03.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뉴딜 2.0 분야 중 1가지 분야 신청

※ 마감일에는 신청 폭주로 인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

- * 신청자격 미달사항 및 정해진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된 자료는 보완 사항이 아니고 반려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백지로 제출 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최초신청업체나 신청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신청자는 반드시 첨부된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 일정

-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혁신장터에서 보완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시 이상이 없거나 보완요청이 빠르게 완료된 업체 순서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제출업체가 다수인 관계로 개별 유선통보가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 선택 → 신청

4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서류

※ 관련 서식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지정 → 관련서식'에서 별도 '내려받기' 가능 함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시 제출 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가.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모두 제출(압축)

※ 반드시 제안 제품에 적용된 해당 특허(실용신안)만 제출

나. 혁신시제품 제안서(공고서 별첨 1)

다. 혁신시제품 규격서(공고서 별첨 2)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특허가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규격서 견본 참조)

② 해당시 제출 서류

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예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를 통과한 제품
신청업체

-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서류 일체 제출

나. 특허(실용신안)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약정서
(공고서 별첨 3)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업무협약서 제출

라. 협업체일 경우 협업승인신청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협업승인신청서(공고서 별첨 4)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 지정기간 3년을 고려하여 협업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성능 비교표 및 기존 제품 규격서 제출(공고서 별첨 5)

-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일 경우만 제출

혁신성평가 통과 업체(혁신성평가 결과 발표 후 개별 통보)제출서류

① 최종 규격서

- 조달청에서 규격 검토를 받은 최종 규격서 제출

②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특허정보진흥센터'로 부터 발급받은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유의 사항>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시 제안서 '4-5. 적용기술'에 표기한 지적 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은 모두 특허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③ 상용화 관련 확인 증빙서류

가. 매출원장

- 매출이 없는 경우 : 매출원장(신청 기업의 전체제품 매출 내역)
- 매출이 있는 경우 : 매출원장,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원장 제출 기준>

- 제안제품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 자료 등 발행 이후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 * 제안서 '1-3. 객관적 근거' 항목에 기술한 시험 자료 기준
- 단,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자료 등 발행 이전에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나. 시험성적서(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유의 사항>

※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5 지정절차 및 혁신시제품 혁신성 평가 관련

□ 지정 절차 안내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시제품이란? 참고

□ 혁신성평가 안내

- 혁신성평가시 심사시간 : 질의응답 10분(별도 발표 없음)
 - * 단, 질의응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상황에 따라 실시여부 결정
- 혁신시제품 혁신성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1부 (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6 참고 사항

□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1. 적부 판정					
혁신적합성	분야적합성	▪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혁신솔루션	▪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대비 뛰어난 향상			
개발완성수준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적합 여부		
	안전성	▪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 항목별 심사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10점)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내외국인 생활편의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공공구매의 필요성(10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확인			
	현안의 시급성(10점)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 여부 확인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을 확인			
혁신성(30점)	제품의 신규성(1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1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20점)	시장규모(10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10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시범사용 수행역량(10점)	수행역량(10점)	▪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절차>

- **(적부판정)**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여부 우선 심사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항목별심사' 진행(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 중단)
- **(항목별심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시범사용 수행역량 항목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 통과

7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1-40호)」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지정 → 관련법령에서 열람 가능)

8 문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전 화
조달청	혁신조달과	☎ 042-724-7664, 7683, 7420, 7217

- 기타사항

- 혁신시제품 제도 문의는 혁신시제품 Q&A,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지정 → Q&A, FAQ 참조)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영상 설명은 하단의 **Youtube**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공고 동영상 설명

<https://youtu.be/vCUvwEWyidl>

- 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 혁신시제품 신규업체 지정 신청 매뉴얼

<https://youtu.be/KoYisZEY2h4>

- 별첨 자료

- ① 혁신시제품 제안서(별첨1)
- ② 혁신시제품 규격서(별첨2)
- ③ 약정서(별첨3)
- ④ 협업승인신청서(별첨4)
- ⑤ 기술·성능 비교표 및 기존 제품 규격서 제출(별첨 5)
- ⑥ 혁신시제품지정 신청 매뉴얼(별첨6)
- ⑦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별첨7)
- ⑧ 한국판 뉴딜 2.0(별첨8)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에서 확인

붙임1**공고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확인**

□ (확인방법)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 제목 선택 → 공고상세→ 첨부파일

②제안서,
③규격서,
④온라인신청
매뉴얼
⑤규정

불임2**입찰참가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부여 처리기간 안내**

- ☞ ①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제조물품으로 등록 및 ②물품식별번호 부여에는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처리기간은 업체의 준비서류 및 담당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처리기간은 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절차(지정 신청 전 업체 사전 준비 사항)**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세부품명번호 10자리 제조물품으로 등록)**

처리부서 : 콜센터, 조달청 등록팀, 각 지방 조달청 경영관리과

온라인 신청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물품식별번호 부여**

처리부서 : 물품관리과

온라인 신청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1>)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세부품명 10자리 제조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관련은
아래 문의사항을 참고하여 해당부서에 문의

※ 온라인 신청방법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매뉴얼 (p5~7)’ 참고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 신청공고 제목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에서
확인(본 공고서 11쪽 참고)

☞ 문의사항

- ①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제조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으로 등록
: 콜센터 1588-0800, 조달청 등록팀(070-4056-7507, 7189), 각 지방 조달청 경영관리과
- ②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관리과(070-4056- 7271, 7257, 6463)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화면 하단 담당자 연락처(분류별 담당자 확인)